

의안번호	제 108 호
의 결 연 월 일	2014년 12월 일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14년 12월 18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8
----------	-----

제안연월일 : 2014년 12월 18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5년도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비 이내에서 월정수당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월정수당 조정(안 제3조)
 - 월정수당을 월 2,640,000원에서 월 3,000,000원으로 조정함
- 적용시점 :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 예산조치 : 의정비 인상분 13,392만원 추가소요
(2015년 제1회 추경시 반영)
- 기 타 :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2015년도 의정비 결정통보공문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월 2,640,000원”을 “월 3,000,000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은 <u>월 2,6</u> <u>40,000원</u>으로 한다. 단, 1월 미 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생략)</p>	<p>제3조(월정수당) ① ----- ----- <u>월 3,0</u> <u>00,000원</u>----- . ----- ----- . ②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 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2014.6.3.>

1. 의정활동비: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결정 통보 공문

- 함께하는 충북 -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



수신자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의회의장
 (경유)
 제목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통보

등록번호	6648
등록일자	2014. 11. 27
처리과	총무담당관실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충청북도의회 의원에게 지급될 의정비를 불임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향후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 1부. 끝.

담당자	부위원장	공무담당관	처	장	의	장
박종복	김하린	김하린	7356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김하린 위원장 김하린

협조자

시행 의정비심의위원회- / (2014. 11. 26) 접수
 우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82 (문화동)
 전화 043) 220-2122 / 전송 043)220-2119 /

()
<http://www.cb21.net>
 / 공개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의정비 결정

- 2015년도 의정비 : 년 5,400만원
 - 의정활동비 : 년 1,800만원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4에 따름)
 - 월 정 수 당 : 년 3,600만원
 - 여 비 :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5 및 별표6에 따름.
- 2016년도부터 2018년도 의정비 : 동결

□ 의정비(월정수당) 인상의 전제 조건

- 도지사는 법적 근거가 없고 감사원으로부터 시정 요구된 소위 의원 재량사업비 편성 관행을 폐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
- 도의회 의장은 공청회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전제 조건으로 제시된
 - 법적 근거가 없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의원재량사업비 편성 요구 관행은 '15년부터 폐지하고
 - 의원행동강령 조례 제정 및 준수, 의정활동평가제도 도입, 해외연수 제도 개선 등은 제10대 도의회 회기동안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2014. 11. 26.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창기

김창기